

『2022년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Tech & Value Up] 공고

창원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2022년 창원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특구 내 우수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 사업내용

- 창원 소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 역량 강화 및 애로해결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
 - **(Tech Up)** 기술핵심기관* 또는 창원시 지역혁신기관* 소속 전담 코디네이터(총괄책임자)가 특구 내 기업 및 특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컨셉부터 제품화까지 통합지원
 - * 기술핵심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지역혁신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 **(Value Up)** 전문수행기관이 특구 내 기업 및 특화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컨설팅, 디자인 및 샘플제작, 판로개척 등의 필요분야 맞춤형 애로 해결 및 성장지원

2. 세부내용

□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총 760백만원

세부 사업명	총 사업예산	과제(기업당) 지원규모	수행기관 (기업지원기관)
① Tech-up(테크업) 지원	500백만원	50백만원 이내	전기연구원 또는 지역혁신기관 소속 전담 코디네이터
② Value-up(밸류업) 지원	260백만원	20백만원 이내	전문수행기관

※ 상시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2년 연중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2. 12. 31 까지 (8개월 이내)
- 지원대상
 - (Tech Up) 창원 강소특구 내 기업 또는 창원 소재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 (Value Up) 창원 강소특구 내 기업 또는 창원 소재기업 중 창원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지원내용
 - (Tech Up) 아래의 지원항목 중 3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품컨셉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사업계획 및 BM 수립*	기업분석을 통한 특화분야 신규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BM) 수립	지원항목 중 3가지 이상을 포함한 패키지형태 지원
제품설계 지원	선진국형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활용 등의 제품설계·전산해석 지원	
시작품 구현	스마트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소량, 다품종의 시작품 구현 지원	
시제품 제작	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자체제작 및 전문 제작업체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인증·평가	정부인증 획득(NEP, NET, 조달우수 등) 지원 및 형식시험, 검수시험, 기타 제품성능 확인을 위한 참고시험 등 시험인증·평가 지원	

* 지원항목 중 사업계획 및 BM 수립은 특구 내 타 지원사업을 통해 수립된 내역도 지원항목으로 인정(예시 : 강소특구 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및 BM을 이미 수립하거나 수립 중인 경우, 나머지 지원항목 중 2가지 분야만 포함하여 신청 가능)

- 기술이전 지원 : 코디네이터 소속 기관과 필요시 지원기술과 관련하여 제품화·양산화에 필요한 특허, 노하우 실시 등의 선행 및 후속 기술이전 계약 체결 가능
- (Value Up) 연구소기업 및 특화기업별 역량, 사업화 준비도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기업진단(평가) 및 현황조사를 통해 맞춤형 역량개선방안 및 발전로드맵 등 도출
- 애로해결 및 성장지원에 필요한 분야의 건별 맞춤형 지원(전문수행기관지정 지원)

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컨설팅 및 성장지원	기술, 특허, 경영, 회계, 법률 등 기업의 수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특구사업 중심) 기획·연계 추진, 정부지원사업 및 외부협력 연계 지원	기업사전진단에 기반한 기업 맞춤형 지원
디자인 및 샘플제작	기업의 부품·소재/제품 디자인 개선(리디자인)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한 샘플(시제품)제작, 제품·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및 기타 디자인 지원	
디지털 자산 구축	기업 기술 제품의 시뮬레이션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구동·분해 영상 및 3D모델링 제작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특정 아이템(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 국내외/산업별 시장조사 및 BM 수립	
홍보·마케팅	기업 제품 및 기술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유사제품 대비 시장성 검증, 국내외 시장조사, 홍보콘텐츠(인쇄물, 영상, 홈페이지등)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지원	
시험 인증	제품 표준화 및 판매를 위한 품질, 제품, 성능, 신뢰성 시험등의 인증 지원	
기타	연구소기업 등의 현황관리·조사·현장방문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전문수행기관 매칭 및 선정 방법

- (Tech Up) 기술/제품 분야를 고려한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또는 지역혁신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내 전문 코디네이터 매칭
 -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방법
 - (확정형) 기업이 기술지원 신청 시 한국전기연구원 및 지역혁신기관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동시 제출)
 - (미정형) 기업신청을 기반으로 한국전기연구원 및 지역혁신기관 연구인력 중 기업 기술지원 내용에 따라 적합한 '코디네이터'를 선발(공모)하여 신청기업과 매칭 ⇨ (제안서 우선 제출)
- (Value Up)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술핵심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수행기관은 지원 대상기업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필요성, 시급성 등의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한국전기연구원)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별 및 매칭,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 (주관기관/전문수행기관/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5.02. ~	○ 모집 공고 및 전문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접수	상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수요조사 기반 지원기업 발굴
↓		
사업내용 평가	분기별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Tech-up 지원) 제안서 및 계획서(제출서류 포함) 작성 후 이메일 접수(nkc0113@keri.re.kr) 또는 창원 강소특구 온라인플랫폼(<https://www.madeinchangwon.com>)을 통해 신청
 - (Value-Up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khs0427@keri.re.kr) 또는 창원 강소특구 온라인플랫폼(<https://www.madeinchangwon.com>)을 통해 신청
 - 신청서 작성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인터뷰 및 역량수준을 판단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전 담당자 문의요망)
 -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Tech-up 지원의 1차 모집 마감은 5월 16일, 선정평가는 5월 말 진행 예정

□ 제출자료

○ Tech-up 지원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한글)	신청기업
2	사업계획서, 제안서(Tech up 지원 한정)		신청기업,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
3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
4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신청기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기업

※ 코디네이터 소속 수행기관의 경우 제출자료 중 4, 5번 자료는 제출 불필요

○ Value-Up 지원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 고
1	참여 신청서	전자파일 (PDF)	신청기업
2	사업자등록증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신청접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개최 예정
- (평가절차)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Tech-up 지원

분류	구 분	평가항목	비 중
수행 기관 (100)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3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40
		●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30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Value-Up 지원 : 특구 내 기업 및 특구사업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기업의 기초역량 수준(기업규모,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별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 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검토사항	내용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검토사항	내용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관련 기술핵심기관의 자체 규정 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제정규정에 따라 과제 소급 적용 예정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한국전기연구원 강소특구기획실	김 흥 섭(Value-up)	055-280-1063	khs0427@keri.re.kr
	나금채(Tech-up)	055-280-1165	nkc0113@keri.re.kr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당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소개 및 육성사업 개요>

□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소개

- **(특화분야)** 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 산업
 - 전기를 생산, 공급, 이용하는 과정이나 활용하는 기계가 이중분야의 속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기술핵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 **(배후공간)** 0.65km² (R&D융합지구(0.22km²), 기술사업화지구(0.43km²),
 - * 배후공간으로 기술고도화지구(0.2km², 예정지)) 강소특구 추가 지정 추진



전담 기관 지자체(경남도·창원시), 한국전기연구원

특화 분야 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

배후 공간 0.65km² (R&D융합지구 0.22km², 기술사업화지구 0.43km²) ※ 기술고도화지구(0.17km²) 추가지정 추진 계속

□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사업목적)**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수요 기업 연계를 통해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규모)** 총 2,900백만원
- **(지원내용)** 기술발굴, 기술이전사업화, 창업기업 육성, 특화성장 지원 등
 - (기술발굴 및 연계) 지역특화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의 발굴·선별 및 수요기업 매칭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및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공공기술을 이전(출자)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양산화 R&BD 지원
- (강소형 기술창업)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및 후보군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투자연계 등 지원
-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기술사업화 전주기 윈스톱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관련 업종(참고)

- 지능전기·기계융합 분야는 크게 ‘지능 전기기계’, ‘지능 전력망’, ‘지능 모빌리티’, ‘첨단전기 소재 부품’ 4가지 분류로 나뉘어짐

고부가가치 지능전기·기계융합 산업으로 창원시 지역산업 혁신



지능 전력망	(C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C221)고무제품 제조업, (C241)1차 철강 제조업, (C25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C252)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C264)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C272)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C28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C282)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C283)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C289)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C29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339)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D351)전기업, (F412)토목 건설업, (F421)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F422)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F423)전기 및 통신 공사업, (F425)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H493)도로 화물 운송업, (M721)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M729)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지능 전기기계	(C231)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C243)금속 주조업, (C259)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61)반도체 제조업, (C265)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C27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C284)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C285)가정용 기기 제조업, (C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M701)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P857)교육 지원 서비스업
지능 모빌리티 전기시스템	(C303)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2)철도장비 제조업, (C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D352)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G452)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M716)기타 전문 서비스업
첨단 전기 소재·부품	(C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42)1차 비철금속 제조업, (C262)전자 부품 제조업, (C263)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C31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739)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